

##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발 의 자 : 전수일 의원

#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전수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6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: 2019년 1월 14일  
발 의 자: 전수일 의원 외 3명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보충질문 시간에 답변시간을 포함시키고, 본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그 소요시간 측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,
- 나. 우리 군 규칙에서만 정하고 있는 의원의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을 삭제하여 시·군 규칙의 형평성 제고를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보충질문 시간 조정, 보충질문 관련 단서 신설(안 제79조제3항)
- “답변시간을 제외한 10분” → “답변시간을 포함한 20분”
  - 의장이 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5분 추가할 수 있으며, 일괄질문·답변 방식에 따른 보충질문은 본질문한 의원에 한함.
- 나. 질문요지서 제출기한 삭제(안 제79조제5항)
- “군정질문 5일 전까지” → “미리”
- 다. 용어 정비(안 제79조제6항)
- “질문” → “답변”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「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 1항에  
의거 입법예고 생략

라. 집행기관 의견수렴 : 2019. 1. 3 ~ 1. 15

##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제3항 중 “10분”을 “20분”으로, “각각 답변시간을 제외하며”를 “답변시간을 포함하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의장이 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5분 추가할 수 있으며, 일괄질문·답변 방식에 따른 보충질문은 본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
제79조제5항 중 “그 요지(원고로 갈음할 수 있다)”를 “미리 그 요지”로, “질문요지서를 군정질문 5일(토요일, 공휴일은 제외한다.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)전까지”를 “질문요지서를”로, “질문시간 3일”을 “질문 3일(질문 첫 날을 기준으로 하되,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.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질문 1일”을 “답변 1일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9조(군정질문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일괄질문·답변 방식은 본질문 20분 및 그 내용의 범위에서 보충질문 <u>10분</u> 이내로 하되, <u>각각 답변시간을 제외하며</u> 일문일답 방식은 <u>답변시간을 포함하여</u> 40분 이내로 하되,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<p>④ (생 략)</p> <p>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<u>그 요지(원고로 같음할 수 있다)</u>와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<u>질문요지서를</u> 군정질문 5일(토요일, 공휴일은 제외한다.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)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<u>질문시간 3일</u>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.</p>	<p>제79조(군정질문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20분</u> ----- <u>답</u> <u>변시간을 포함하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의장이 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5분 추가할 수 있으며, 일괄질문·답변 방식에 따른 보충질문은 본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<u>미리 그 요지</u> ----- ----- ----- <u>질문요지서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질문 3일(질문 첫</u> <u>날을 기준으로 하되,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. 이하 기일</u></p>

⑥ 군수는 제5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구체적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 1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, 의장은 송부 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.

⑦ (생략)

계산에서 같다) --.

⑥ -----  
-----  
---- 답변 1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법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  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  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43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